

신영부동산신탁(이하 '회사')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5조 (정보교류의 차단) 및 「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」 제73조에 의거, 정보교류 차단 관련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.

### 1.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

회사는 법 제17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, 고유재산 구성 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, 신탁재산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를 생산·취득하고 있으며, 이 중 부동산(지상권·지역권·전세권·임차권·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포함) 및 특별자산(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)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.

### 2.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부문별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

현재 회사 내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은 없습니다

### 3.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

회사는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해당 법인과 관련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.

### 4.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유형 및 대응방안

회사는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, 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,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,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와 관련된 거래를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해당하는

경우 정보교류통제 총괄 집행 책임자에게 보고, 관련 거래 중단, 고객에 해당 사실의 고지 등 이해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

## 5.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

회사는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추가 또는 변경 시 홈페이지에 공개 예정입니다.